



#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문제점

윤상호 연구위원

## 요약

■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 「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(안)」을 발표하였다. 개편안의 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현실화이며, 실질소득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모색해 현 부과체계의 허점으로 지적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라는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시행 중인 재산수준에 의거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현 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.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과라는 원칙성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.

■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실질소득과 보험료 간의 괴리현상 및 전월세 급등으로 인한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「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(안)」을 지난 11월 15일 발표하였음.

-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같으나 임대 및 사업소득으로 인해 실질소득에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소득에만 기반한 보험료 부과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음.
-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개인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 지위를 얻는데 어려움이 없어 소득의 유무를 떠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제도의 허점을 보여 왔음.
-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체계가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재산 및 생활 수준을 척도로 한 대체적 측정과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사례처럼 전월세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.
  - 또한 소유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생활수준 파악은 경제생활의 실제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.

■ 보건복지부의 개편(안)은 위의 지적들을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, 이는 소득 및 생활수준 계층 간의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.

●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의 시행으로 부과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.

〈표 1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

구분	대상자	개편안	예상 대상자 수	예상 건보 수입변화
직장가입자	7~8천만 원 이상의 임대/사업 소득자	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	20,000~37,000명	2,072~2,231억 원
	연 종합소득 4천만 원 이상의 피부양자	지역가입자로 전환 편입	7,600명	180억 원
지역가입자 <sup>1)</sup>	전월세 형태의 임대 주거자	2년간 10% 이상의 상승분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	28만 세대	-328억 원
		보증금 300만 원의 기초공제	103만 세대	-546억 원

주: 1) 자동차 배기량에 근거한 생활수준 파악 합리화 방안은 향후 추진함.  
 자료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.

● 전월세 상승률의 상한제와 더불어 인상분에 따른 부채 발생 시 이를 공제하여 보험료에 부과하도록 함.

■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현재 시행 중인 부과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개별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한시적으로 잠재우는 조치이며, 동 개편안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.

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안은 근본적으로 실질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원칙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직장가입자간 또는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모든 가입자들 간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함.

- 동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생활수준 파악을 통한 부과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형평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함.

● 전월세금 상승률 상한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부채공제안의 경우 그 대상이 동일 주소 거주 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불형평성을 야기할 수 있음.

- 동일한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한 지역가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현 개편안은 동일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에게만 개편안의 혜택이 귀속됨.

- 또한 전월세 보증금 인상 요구분을 충족시킬 경제상황이 안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보증금 인상 부담 있는 거주지로 비자발적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.
-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은 이주비용의 또 다른 항목으로 인식이 되어 현 주거지 임대인에게 더 많은 협상력이 주어지는 효과가 예상됨.

- ■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의 개별적 해결 시도보다는 전 가입자의 실질소득비례 보험료부과라는 원칙성에 충실할 수 있는 부과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.
- 현 부과체계를 큰 틀 내에서 개혁하여 전반적인 국민의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.
-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만의 개편안보다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소득 파악을 통한 수입원 확대를 통해 개편안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. **kiri**